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08. 10. . 제 출 자:평 창 군 수

1. 제안 이유

- ○「경관법」(07.5.17 제정) 및 「경관법시행령」(07.11.13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제정된 현 조례를 「경관법」에 맞게 정비하고,
- 우리군의 자연환경과 문화, 가치, 정체성을 살린 경관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린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명을 「경관법」에 맞게 변경함
- 조례에서 경관 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해야 하므로 조례의 명칭을 「평창군경관조례」로 변경
- 경관사업의 대상(안 제9조)
- 「경관법」에서 정한 대상에 추가하여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수변공간의 경관개선, 건물 리모델링, 간판정비사업 등을 경관사업 대상으로 규정
-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경관사업 및 경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 나 소요되는 비용 지원근거 마련
-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경관법」제23조제1항에 의거 경관위원회 설치
- 경관위원회의 심의 의제 및 제외 대상을 규정함(안 제19조)
 - 심의의제 대상
 - · 군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 ·「강원도 경관형성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받은 사업 등
 - 심의제외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응급복구 사업
- 경관을 위한 권고 및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 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연환 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 제한
 - 이미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도 경관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실시(2008. 8. 1 ~ 8. 22), 제출된 의견 없음.

평창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경관형성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경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창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경관계획"이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 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
 -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하여 평창군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①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에 관한 처리) ①군수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 2. 경관자원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 3. 경관계획의 합리성과 실현가능성
 - 4.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②군수는 경관계획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 및 관련기관에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 및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군수는 제1항에 의한 검토사항 및 경관계획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경관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8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 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추가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 ②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동안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군수는 공청회 및 주민공람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평창군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타당하다고인정되는 때에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 2.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 정비사업
 - 4.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군수 또는 평창군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2. 사업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또는 이미지도
 - 3. 사업 기대효과
 - 4.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평창군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 제11조(경관사업에 대한 지원 및 감독)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평창군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법 제13조 및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관사업
 - 2. 군수가 경관 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창군경관사업추진협의 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경관 미래상) 설정
 - 2. 경관사업의 실시계획안 및 사업시행방안 결정

-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 제13조(협의체의 구성) ①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1.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주민대표
 - 2. 경관업무 및 경관사업 추진부서 공무원
 - 3.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 ④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 ⑤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4조(협의체의 운영) ①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통할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경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평창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16조(위원회의 기능) ①영 제17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
 - 1.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 2. 군수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 3.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외형 디자인 및 단지내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4.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관을 고려한 각종 개발 기준 수립 내용
- 5. 기타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②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그 직계가족이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 ④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②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심의 의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 경관분야가 별도로 구분되고 위원이 위촉 또는 임명되어 있으며,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 1.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평창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 2. 「평창군 건축조례」에 의한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 3. 「강원도 경관형성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 받은 사업
 - 4.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 5. 현상공모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디자인 사업

- ②「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서 제외한다.
- 제20조(경관을 위한 권고) ①군수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도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관형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③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등의 인허가 또는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④군수는 이미 완료된 사업장(건축물, 시설물, 사업부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건물 등 소유자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경관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30일내에 경관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 ⑤군수는 제4항에 따라 경관개선을 권고 받은 사업자가 경관개선 계획 서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비의 일 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군수는 제4항에 따라 경관개선을 권고 받은 사업자가 경관개선 권고 에 불응하여 경관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 보조사업 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경관법

-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1.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 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 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2.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 3.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 4.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 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5.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5.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 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③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시행일 2007.11.18)
- 제10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⑤(생략)

- 제1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4.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③(생략)
-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생략)
 - ③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3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생략)
- 제24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다음 각호와 같다.
 - 1.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2. 경관계획의 승인
 - 3. 경관사업의 승인
 - 4. 경관협정의 인가
 - 5.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2.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고나한 사항
- 3.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 4.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5.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경관법시행령

-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경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한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③(생략)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 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
 -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제 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 <u>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u>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 10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 4.(생략) ②(생략)
-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목표

- 2. 사업주체
-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 5. 유지관리 방안
- 6. 사업비용
-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제17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 제1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 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⑤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 ⑥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u>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u>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숲·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5조(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 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및 전통·생태마을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 나 지역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 3. 그 밖에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